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167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31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3. 11. 10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성구

별지